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강도강간죄를 범한 사람의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97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19.
3. 회부연월일 : 2026.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두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하고자 함(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형법」 제339조에 따른 강도강간죄¹⁾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비지도사 및 일반경비원의 자격제한 기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의 기간 등)을 현행법 제10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5년에서 개정안 제10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10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 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1)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개정안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 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 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 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 303조, 제305조, <u>제305조의2</u> 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부터 제 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 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 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 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 -----<u>제305조의2</u>, <u>제339조의</u>--- 라. ~ 바. (현행과 같음) 6. ----- ----- ----- -----

현행	개정안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u>제343조까지의</u>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 ③ (생략)	----- ----- 가. ----- ----- -----<u>제338조까지, 제340조부터 제343조까지의</u>--- 나. (현행과 같음) 7.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5호다목에 규정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의 죄는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함.

현행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6호가목에 규정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는 「형법」 제38장의 절도와 강도의 죄²⁾에 해당함.

< 현행 「경비업법」의 결격사유와 대상범죄 비교 >

경비업법 규정	제10조제1항제5호다목	제10조제1항제6호가목
결격사유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대상범죄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등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살인, 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등

2)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 제343조(예비, 음모)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6호가목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률에서는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와 제38장의 절도와 강도의 죄가 모두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6호가목에 포함되어 자격제한 기간은 5년이었음.

2014년 12월 30일 개정·시행된 「경비업법」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³⁾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는 제10조제1항제5호다목에 규정했고, 기존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6호가목에서는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를 삭제함.

개정안은 형법 강도강간의 죄가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6호가목이 아닌 제10조제1항제5호다목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범죄의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하고, 다른 성범죄를 범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3) 「경비업법」이 2014년에 개정된 이유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업 법인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성범죄 결격자 배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출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1281, 발의일자: 2014. 7. 31.)의 제안이유

참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8년 1월 16일 개정되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3헌마585등 2016. 3. 31. 결정 등) 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한 것임.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 일자: 2017. 12. 21., 의안번호: 2010973)의 제안이유

다만, 개정안은 현행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6호가목에 규정된 범죄 중 「형법」 제339조에 따른 강도강간의 경우에만 경비지도사 및 일반 경비원의 자격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는 반면, 「형법」 제338조4)에 따른 강도살인·치사 등의 자격제한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강도살인·치사 범죄 등은 강도강간과 유사하게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6호가목에 규정된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 범죄 외의 범죄 (강도살인·치사, 인질강도, 특수강도 등)의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 자격 제한 기간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2024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강간(소계)은 4,777건, 유사강간(소계) 897건, 강제추행(소계) 15,377건이 발생했으며, 강도(소계)는 477건이 발생했고, 강도(소계) 중 강도강간은 3건이 발생함.⁵⁾

< 강간 등 범죄 발생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강간(소계)	5,467	5,120	4,777
유사강간(소계)	947	908	897
강제추행(소계)	15,864	16,189	15,377
강도(소계)	516	573	477
강도강간	5	5	3
특수강도	174	197	170
강도상해/치상	163	160	112
강도살인	14	13	19
인질강도	2	4	5

자료: 2022, 2023, 2024 경찰통계연보

4)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경찰청 「2024경찰통계연보」 224면, 225면

참고로, 경찰청은 강도강간죄는 자격 제한 기간이 10년인 다른 「형법」상 성범죄들보다 중한 죄이고, 현행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제5호라목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6)에 따른 특수강도강간죄는 이미 결격기간을 10년으로 규정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